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해 콘텐츠 제작·유통시설 금지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3호)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85호)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8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76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개요	1
-------------	---

【박해철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민전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이춘석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백선희의원안】

1. 제안 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II. 검토의견	8
----------------	---

1.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해 콘텐츠 제작·유통시설 금지	8
--	---

※ 참고자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17
-----------------------------------	----

I. 개요

【박해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

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김민전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15.

다. 회 부 일 : 2026. 5.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이춘석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18.

다. 회 부 일 : 2026. 5.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백선회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백선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8. 6.

다. 회 부 일 : 2026.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

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 33호 신설).

II. 검토의견

1.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해 콘텐츠 제작·유통시설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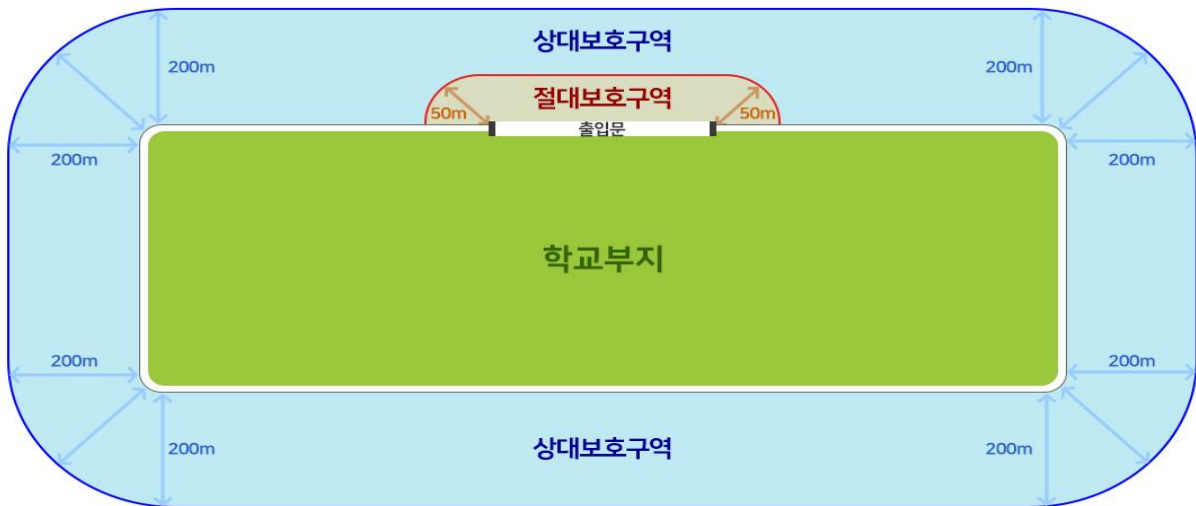
[illegible]

<u><신 설></u>	<u>제10조의2(긴급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 확인 시,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u>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제외한다)</u>	<u>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안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음¹⁾.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및

1)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을 허용하고 있음(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제9조에 열거된 모든 행위 및 시설 금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 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네 건의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금지시설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과 같이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음란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는 형태의 변종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업소가 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됨에도 교육환경법상의 금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²⁾에 이를 금지하려는

2) 연합뉴스, 강남 초등학교 100m 앞 '사이버 룸살롱'…막을 법이 없다, 2026.4.26.

것임.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극적·선정적 영상물, 도박 조장 콘텐츠 등이 등·하교길과 생활권에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 중심 생활권을 보다 안전한 교육과 보호의 공간으로 재정립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개정안에서 금지하려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함.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13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³⁾, 최근의 논란 발생 초기에는 경찰과 지자

3)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체에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이 동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가족부에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질의한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현장점검을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음.

< 성평등가족부 검토의견('26.5.7.) 주요 내용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는 타 법령 상 인·허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업소(엑셀방송 스튜디오)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서 명시한 1. 시설형태 2. 설비유형 3. 영업형태를 모두 충족
 - ※ 개별로 구획된 공간에서 영상물 제작 및 유통이 이루어지며,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자료: 교육부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 따를 때에도 ‘사이버 룸살롱’ 등 영업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이미 교육환경법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로 볼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시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4건의 개정안에 포함된 ‘선정적 방송’,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는 참고자료 참조.

츠' 등 표현은 추상적이고 가치판단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판단과 제재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바, 업종·시설별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의적 해석·운영의 우려가 있음.

- 셋째, 다른 세 건의 개정안과 달리, 박해철의원안은 지자체장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긴급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안 제10조의2),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조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법 제10조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시·도지사 등이 영업 정지, 시설물 철거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해당 절차에는 판결의 결과와 같은 사법절차를 전제하지 않았는바, 현행법상으로도 금지행위·시설인 경우에는 즉각 조치가 가능한 상황임.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시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에 해당하므로, 입법실익이 없음
- 매체물의 유해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되므로, 제작 완료 전에 특정 시설을 금지시설로 판단이 곤란하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입지를 제한하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예방적 규제 우려
- ※ 드라마·영화·웹콘텐츠 제작·촬영시설, 기획 단계의 사무실 등이 포함될 가능성 있음

○ 시·도교육청4): 신중검토

- 해당 업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불필요
- 또한, 제9조제33호로 신설할 경우 상대금지시설에 해당하여, 현행법 제9조제13호 절대금지시설과 상충됨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함

문 의 처

02)6788-5184

4) 서울·충남·충북·전남광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2025. 12. 1., 일부개정